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정오표>

오	정	비고
【197】단, 유고시 보선된	【197】다만, 보선된	
【233】단, 유고시 보선된.....잔여임기한다.	【233】다만, 보선된.....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2013. 11. 00) 【296】 제1조(경과조치) ① 【196】 제1항, 【203】 , 【219】 , 【232】 제1항, 【254】 은 2018년부터 시행한다. ② 【254】 제158조 ③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000】 제2조(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00) 【000】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00】 제2조(경과조치) ① 【196】 제1항, 【203】 , 【219】 , 【232】 제1항, 【254】 <u>의 규정 중 정회원 연수과정 이수</u>에 관한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순서를 교체함. 【296】 → 【000】 ② “<u>의 규정 중 정회원 연수과정 이수</u>에 관한 규정”이 편집과정중 누락됨 ②항은 필요없는 사항으로 삭제함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④ <u>2/3 이상의</u>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④ <u>3분의 2 이상의</u>	제4항은 【159】 제58조 재무부직무 ⑩으로 이동 신설이 타당함.
【917】 제34조 ⑤ <u>제외된다.</u>	【917】 제34조 ⑤ <u>제외된다.</u>	
【924】 제41조(재판의 절차) ⑥ <u>증거조시</u>	【924】 제41조(재판의 절차) ⑥ <u>증거조사</u>	
【1052】 제38조(벌칙처벌) ⑨ <u>취임 전, 또는 후 에</u>	【1052】 제38조(벌칙처벌) ⑨ <u>취임 전, 또는 취임 후</u>	
【108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일본 <u>20개 지방</u> 으로 한다.	【108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u>대전중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u> ,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일본 <u>23개 지방</u> 으로 한다.	대전중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지방 신설 20개 지방 → 23개 지방
17. 학원선교회 규칙 제 2 장 조 직 제4조 찬성하는 <u>목회자로</u>	17. 학원선교회 규칙 제 2 장 조 직 제4조 찬성하는 <u>이로</u>	‘비고란’ 내용 삭제
제9조 <u>1년</u> 으로	제9조 <u>2년</u> 으로	‘비고란’에도 1년으로 변경

오	정	비고
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회 회원은 <u>감리회</u>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회 회원은 <u>감리회</u>에 ② : 본 회 대의원은 <u>본 회 임원구성</u>	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회 회원은 <u>기독교대한감리회</u>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회 회원은 <u>기독교대한감리회</u>에 ② <u>대의원</u> : 본 회 대의원은 <u>본 회 임원과 임원구성</u>	① <u>감리회</u> → <u>기독교대한감리회</u> ② : → ② <u>대의원</u> : 탈자 삼입 본회 임원구성 → 본회 <u>임원과</u> 임원구성
	제12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회 임원은 제11조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원회비 납부의무를 가지며 임원회비는 총회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② 권리 : 본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신설)	남선교회 규칙 상정안 중 신설안이 편집과정에서 누락됨 원안 제12~24조 → 제13~25조로 변경

<서울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충북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에서 공동 발의된 개정안>

원안	개정안	비고
【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u>다만, 총회대표로 연속해서 2회 선출된 이는 다음 회기 대표로 선출할 수 없다.(개정)</u>	
【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	【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 <u>다만, 입법의회 회원으로 연속해서 2회 선출된 이는 다음 회기 입법의회 회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개정)</u>	

*장정개정위원회 의견

-. 당연직으로 선출되어야 할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총회대표로 선출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① 교역자 중 2번 연속하여 총회대표가 된 후에 다시 감독 또는 감리사에 피선된 경우 총회대표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 ② 본부 감사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연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최대 4번까지 참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 ③ 연회 총무나 각 국 국장들은 당연직 총대가 아니므로 선출되어야만 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 임기가 4년이며, 연임하면 8년을 시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업무상 연회 총무나 각 국 국장들은 총회 대표로 참석하여야 할 것인데 총회대표로 선출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 ④ 평신도 중 이미 연속해서 총회대표가 된 사람이 전국연합회 단체장에 피선될 경우 이 규정에 저촉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감리회 정책의 단절을 막고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려는 노력과 상반된다.

새로운 장정 개정안은 총회 대표 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국 위원회 위원이나 각 재단 이사회의 이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처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소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교체하지 않고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리회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원 교체로 발생하는 업무의 단절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2년마다 새로운 위원이 들어와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각 국 국장이나 직원에 의해 감리회 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감사위원회처럼 일부 이사나, 위원들을 교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감리회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개정안과 총회대표 선출을 제한하자는 6개 연회 공동 발의안과 서로 상치되고 있으므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부칙 누락 부분>

제2편 헌법

부 칙 (2013. 11. 15)

【000】 제1조(시행일) 이 헌법 및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편 의회법

부 칙 (2013. 11. 15)

【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편 교회 경제법

부 칙 (2013. 11. 15)

【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편 재판법

부 칙 (2013. 11. 15)

【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부 칙 (2013. 11. 15)

【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부 칙 (2013. 11. 15)

【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편 과정법

부 칙 (2013. 11. 15)

【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